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
1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관련입니다.
2.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 된 경우 변경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93호, 2024.2.20.)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이번 개정고시(안)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**2024년 4월 20일까지** 검토의견서를 작성(관련자료 첨부)하시어 우리처(식품표시광고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또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·도, 관련 협회에서는 식품 관련 소속기관 및 부서에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,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일부개정고시(안)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 개정고시(안)은 우리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 입법/행정예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1부

2. 규제영향분석서 1부

3. 검토의견서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, 지방청, 관계부처, 시도 관련 부서, 관련 협회 및 단체, 보건복지위원회 등

주무관

박지현

사무관

최충렬

식품표시광고 전결 2024. 2. 20.

정책과장

김철희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2794 (2024. 2. 20.)

접수

우 28159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
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190

팩스번호 043-719-2180

/ aeiou2001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